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추가로 위임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에서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사무위임 확대 (시행령 §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실적 심사 등 보조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배제(법 §31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법 §33조의2), 강제징수(법 §33조의3) 사무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17조(사무의 위임) 개정

나. 기준보조율 변경(별표1 제13호)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변경된 ‘13. 연근해어선 감척’의 기준보조율 변경사항을 시행령 별표1에 반영

다.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2 제81호)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를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자체노력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부식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3. 연근해어선 감척	연안: 70 근해: 100	

별표 2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 경로당운영(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7조(사무의 위임)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

<별표1>

현행			개정안		
사업	기준 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 보조율	비고
13. 연근해어선 감척	연안: 80 근해: 100		13. 연근해어선 감척	연안: 70 근해: 100	

<별표2>

현행	개정안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81. 경로당 운영(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락처	(044) 215 - 7158